

# 石油類稅 부담이 너무 무겁다

申 相 民

(東亞日報 經濟部·記者)

이번 定期國會에서는 特別消費稅法을 改正, 그 対象品目과 稅率을 재조정할듯 하다. 石油業界는 ① 從量稅로의 轉換 ② 輕油나 揮發油를 사치품 또는 高級材 品目으로 보지말자 ③ 附價稅가 늘어난 모순을 없애자고 建議 하고 있다.

## 1. 세금은 무엇인가

죽음과 稅金처럼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가 있다. 적어도 오늘의 文明社會를 살아가는 일반인의 生活을 例로 든다면 정말 그렇다는 共感이 느껴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消費하는 물건 치놓고 어느 하나 稅金과 無関한 것은 없다.

「人間은 왜 사는가 하면 죽기 위해서 산다」라는 逆說的인 표현이 성립한다면「人間은 왜 사는가 하면 稅金을 내기 위해서 산다」라는 표현도 같은 論理로 성립한다. 모든 행위, 태어나는 순간에 받는 産婦人科 의사의 서비스로부터 죽음에따른 장의행위에 이르기 까지 어느 것 하나 稅金과 관계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이 稅金과 삶은 때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稅金에 대해 한 두마디 쯤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겠다.

人間은 稅金을 내기 위해서 산다?

무거운 稅金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稅金은 自由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이라는 肯定論도 있다. 大藏相시절의 처칠은『國庫의 歲入증대를 위해서 건배할 것을 종종 제안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내 주위에도 가끔『教育을 위해 한잔만 더』를 주장하는 정겨운 친구들도 많다.

人類의 歷史만큼이나 오래된 것이 稅金이기 때문에 이른바 租稅理論도 무궁무진하다. 『勞動을 많이 하고 그 代價를 받아 節約해온 사람들에게 收入의 全部를 먹고 마신 사람보다 더 많은 稅金을 거두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가』라는 말은 단순한 bình정거림이 아니라 하나의 훌륭한 稅金理論이다. 所得이 많은 階層일수록 더 높은 稅率로 所得稅를 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固定觀念이지만, 최근 들어 美國에서는 所得稅率의 累進체계를 單一 稅率體系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언제 어느 때나 「高所得高稅率」이 불변의 眞理일 수는 없다는 一面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최근 美國 豫산국장 스토크만은 레이건 行政府가 다음 회계년도 的 稅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현재 최고 50%까지 누진되는 所得稅率構造를 10~20% 單一稅率로 바꿀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적으로 부담의 衡平이 보장되는 稅制를 찾으려면 옛날의 人頭稅를 다시 復活하는 방법밖에 없다』고「衡平이 유지되고 이해하기 쉬운 稅制」를 요구하는 일반에 대해 倅증을 부리는 稅制당국자의 論理나, 『稅金은 원래가 不公平한 것이 그 本質이다. 힘센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덜 몰도록 만들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학구자들의 해학적인 論理나 따지고 보면 모두 一面의 眞實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얘기들이다.

稅金理論은 본질적으로 걷는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오리가 껍떡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쓰다듬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털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하고, 내는 사람의 立場에서는 빛 중에서 가장 값기 싫은 빛이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說明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내는 사람에게도 좋고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든 만족스러울 수 있는 稅金의 論理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 2. 特別消費稅

이 원고를 쓰면서 필자는 새삼 間接稅의 性格을 흥미롭게 느꼈다. 주변에 굴러 다니는 것이 稅金얘기고 또 稅金관련 책도 洪水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直接稅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間接稅, 그 중에서도 特別消費稅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전체歲入중 60%이상이 間接稅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現象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역시 이윤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稅金과 소비자에게 일단 전가되는 稅金은 그 부담의 強度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間接稅중에서도 附加價值稅는 그 복잡함과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실질적으로 所得稅를 결정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日本이나 自由中國이 배워 가려고 할 정도로 일단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關心을 끌고 있는 탓인지 그에 대한 資料도 충분하다.

그러나 特別消費稅는 거의 불모지대에 가깝다. 다만 精油業界나 전자업계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내려주거나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탓으로 紙上에는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이같은 觀點에서 본다면 진정한 意味에서 누구보다도 特別消費稅의 모든 것을 가장

# 전체歲入중 60%이상이 間接稅라는 놀라운 現象 資料不毛地帶에서 特別消費稅는 石油業界가 제일 잘 알아

잘 아는 사람들이 石油業界사람들이란 것은 自明해지기 때문에 사실 필자로서는 두려운 감이 없지 않다.

石油값이 오를 때마다 꼭 한두번씩은 왜 우리 나라 揮發油값은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비싸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같은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그 만큼 揮發油값에 대해 직접 關心을 갖는 階層, 곧 마이카族이 늘었다는 얘기로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特別消費稅는 附加價值稅가 單一稅率로 운영됨에 따른 稅金부담의 所得逆進性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稅金이라고 한다.

즉 高所得層이 소비하는 財貨나 用役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저소득층의 稅金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해 租稅부담율의 衡平을 기하도록 했다는 것이 걷는 사람들, 곧 稅制當局者들의 얘기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租稅수입의 확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特別消費稅 징수액은 목표보다 미달됐지만, 6천6백52억원에 달해 內國稅收의 14·5%, 전체 歲入규모에 비해서는 8·1%에 달했다. 이중 揮發油에서 거둔 것이 2천9백1억원으로 전체 特別消費稅 징수액의 43·6%에 달한다.

작년 한햇동안 두고 두고 爭점이 됐던 教育稅新設로 올해 거둘 수 있는 금액이 2천3백79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揮發油에서 거두는 稅金이 얼마나 재정운용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재정운용의 측면에서 그 만큼 揮發油에 대한 稅率을 낮추거나, 特別消費稅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올해 特別消費稅 징수목표는 예산기준 8천6백11억원, 작년 징수실적보다 29·4%가 늘어난 규모다. 揮發油에 대한 特別消費稅 징수액이 같은 비율로 늘어난 것이라고 가정하면 3천7백50여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된다.

特別消費稅 세율구조를 봐도 이 稅金에서 揮發油가 차지하는 比重이 얼마나 높은지, 또 이 稅金이 얼마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측면에 力點을 두고 있는 稅目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寶石類·당구·수렵용총포류·오락용 사행

기구·毛皮類등에는 100%, 카바레·나이트 클럽·요정등의 유흥음식요금에는 10%를 붙이고 있으면서 揮發油에는 160% (實行稅率은 130%)를 붙이고 있는 것이 그 같은 설명으로 통한다.

즉 가장 돈많은 階層이 사용하는 寶石類에 대해서 보다 揮發油에 대해 더 높은 稅率을 적용한다는 것은 稅制당국의 주장처럼 附價稅의 소득역전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特別消費稅를 둔 것이 아니라 財政收入을 확보키 위해 이 稅金을 물리고 있다는 것을 反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特別消費稅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財政收支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觀點에서 그 결론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特別消費稅法은 작년 國會에서도 부분적으로 개정됐고 또 오는 定期國會에서도 다소 개정될 것이 확실하다.

表面的인 이유는 그 동안 경제발전으로 消費패턴이 달라져 과거에는 사치품으로 분류, 稅金을 무겁게 매기는 것이 타당했던 品目중 일부가 大衆消費品目化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은 不景氣에는 消費稅制의 본질인 租稅부담의 완전전가가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生産者가 일부라도 부담해야 하는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消費稅率을 내려 달라는 要求도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 3. 外國의 消費稅制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附價稅가 있고 또 특정품목에 消費稅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주로 英國·프랑스등 EC國家의 일부에 그치고 있다.

附價稅가 없는 日本은 從量稅형태의 石油가스稅를 두고 있고 美國도 揮發油 1갤론당 4센트의 從量稅를 매기고 있다. 美國의 경우 卅에 따라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石油類에 대해 稅金을 매기고 있으므로 從量稅와 從價稅가 병행되고 있는 지역도 많은 셈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附價稅가 있지만, 酒類 및 石油類제품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消費稅

를 물리고 있다. 高級揮發油 1헥터리터 당 144·23프랑의 從價稅형태.

自由中國의 경우는 역시 附價稅는 없고 物品稅(소비세)를 두고 있다. 揮發油에 대해서는 55%의 從價稅가 적용된다.

英國도 附價稅를 실시하면서 石油類製品에 대해서는 별도의 消費稅를 매기고 있다. 1갤론에 0·37파운드의 從量稅가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外國의 石油類稅제도를 우리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國內의 石油類稅부담이 무겁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特別消費稅率 자체가 從價稅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엄청나게 높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價格引上에 관계없이 稅金은 일정한 금액이 유지되는 從量稅형태를 택하고 있어 우리 나라보다 石油業者에게 有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稅金때문에 우리 나라 揮發油값이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주장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또 현재와 같은 不況아래서, 높은 價格때문에 상대적으로 揮發油消費가 줄어드는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稅率引下를 주장하는 業界의 요구가 더욱 가열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또 이른바 가짜揮發油라는 不良燃料가 나도는 까닭도 揮發油값이 다른 石油製品에 비해 지나치게 높는데 그 原因이 있다고 볼때 揮發油에 대한 特別稅率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당위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 4. 揮發油特消費稅率인하 展望

財務部관계자들은 石油業界를 포함, 特別消費稅부과대상업체들의 희망사항이 대략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石油업계는 從量稅로 轉換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稅金에 대한 業界의 희망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고 나오든간에 따지고 보면 稅金을 짊어 달라는 얘기 외에 별 것이 아니다. 石油業界가 從價稅에서 從量稅로 바꾸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앞으로도 石油값이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고 올라갈 것이므로 從量稅로 바뀌면 그 만큼 有利한

우리나라 揮發油값 엄청나게 비싼 것은 稅金때문  
휘발유特消費稅率引下주장은 當爲性충분해

□ 特別寄稿 □

것이라고 계산, 결국 稅金을 덜 물도록 해 달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두번째 希望사망은 사치품 또는 고급소비재라고 보기 어려워진 品目에 대해서는 特別消費稅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石油類의 경우라면 輕油가 여기 해당된다. 揮發油가, 서민의 발인 영업용택시의 燃料用으로 쓰인다는 측면에서 사치성물품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비슷한 論理에 입각하고 있다.

또 하나의 業界주장은 特別消費稅 부과로 附加價值稅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즉 附價稅가 그 과세 표준을 特別消費稅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揮發油등의 경우 附價稅부담이 명목세율 10%를 크게 웃돈다는 지적이다.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선책을 요구하는 주장도 없지 않다. 즉 特別消費稅는 3개월에 한번씩 내는 附加價值稅와 달리 매달 매달 내야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의 불편이 과중하므로 課稅期間을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財務部관계자들의 솔

「財政수요의充足」누군가負擔  
稅金負擔은 줄다리기의結果

직한 고백은 매우 간단하다.

特別消費稅를 없앨수만 있다면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財政사정 때문에 달리 도리가 없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稅率을 대폭 낮추기도 어렵다는 얘기로 통한다. 이번 定期國會에서 特別消費稅法을 개정, 그 대상품목과 稅率을 재조정하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財政수요의 충족」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볼때 그 조정폭이 미미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우기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엄청나게 내릴 예정이므로 갈수록 稅收전망이 불투명해 질 것이라고 본다면 『特別消費稅를 없앨수만 있으면 아예 없애고 싶으나 그렇게 될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稅制當局者들의 얘기도 이해가 간다.

稅金부담, 그것은 줄다리기의 結果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어떤 형식으로 부담하던 국가운영에 필요한 만큼 확보해야할 性質의 것이기도 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 稅金은 大乘의으로 봐야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겠다. \*

● 石油用語解説 ●

LNG (Liquefied Natural Gas)

液化天然가스. 메탄이 主成分인 天然가스를 영하 162도까지 냉각, 액화시킨 것이다. 天然가스를 液化하는 목적은 수송과 저장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天然가스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먼지를 제거하고 脫黃, 脫炭酸, 脫濕등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로서의 품질은 최고이다.

天然가스를 液化하면 그 용적이 580분의1로

축소되어 大容量의 天然가스를 小容量으로 할수 있어 수송과 저장에는 편리하지만, 商業的으로는 대량의 가스를 영하 1백62도까지 냉각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또 저장탱크는 保冷해야 되고 수송용탱크는 保冷된 탱크를 실어 漏洩로 선체가 냉각되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